

의안번호	제 391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6년 5월 31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1
----------	-----

제출연월일 : 2016년 5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농어촌개발기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농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안 제8조)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장
- 농어촌개발기금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11조)
  -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문구의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를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 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법인체”란 법 제28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를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로 한다. 제2항 중 “충청북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21조에 따른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자의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자의 선정은 시장·군수가 한다. 다만, 도지사가 시·군별로 지원품목과 사업비를 배정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사업자의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및 제13조 중 “특별회계”를 각각 “기금특별회계”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u>“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 을 위하여 <u>충청북도 농어촌개발 기금특별회계</u>를 설치하고, 기금 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생   략)</p> <p>1. <u>“농어업” 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 다.</p> <p>3. <u>“생산자단체” 란 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 한다.</u></p> <p>4. <u>“법인체” 란 법 제28조의 규 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u></p>	<p>제명 <u>“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u></p> <p>제1조(목적) ----- ----- ----- <u>충청북도 농어촌개발 기금 특별회계</u>-----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p> <p>1. <u>“농어업”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어촌 발 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u></p> <p>3. <u>“생산자단체” 란 법 제3조 제4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 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 자단체를 말한다.</u></p> <p>4. <u>“법인체” 란 법 제28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 9조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u></p>

제3조(심의위원회등의 구성) ①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기금특별회계”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조(지원대상 사업자의 선정)

① 제5조와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자의 선정은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도지사가 시·군별로 지원품목과 사업비를 배정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대상자의 선발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심의위원회등의 구성) ① -

-----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이하 “기금특별회계”라 한다)-----  
-----  
-----  
-----.

②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21조에 따른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대상 사업자의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자의 선정은 시장·군수가 한다. 다만, 도지사가 시·군별로 지원품목과 사업비를 배정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사업자의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 ① 융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시설자금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11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 5. (생략)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의 각 호중 해당되는 사업비와 특별회계 운용경비로 지출한다.

③ 특별회계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 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세입·세출) ① 기금특별회계-----  
-----.

1. ~ 5. (현행과 같음)

② 기금특별회계-----  
-----기금특별회계-----.

③ 기금특별회계 -----  
-----  
-----.

## 관련법령 발취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2. 수산자원·어장은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수산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이용·보전되어야 한다.
3. 수산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4. 어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고로서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 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전 지역
  -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7.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8.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9. "어장"이란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 등으로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